

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

I. 수출물품 원산지검증이란?

- 원산지검증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약·조약 및 국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조사하고, 위반 내역 확인 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이며,
 - 수출물품 원산지검증은 수입상대국의 요청 등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대상은,
 - ①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
 - ② FTA 외에 관세양허를 위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
 - ③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·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 등임
- ※ 참고사항 : 금번 제공되는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동향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우리나라에 검증을 요청하는 건에 한정된 자료이며, 미국·캐나다 등 수입국 관세당국이 직접 우리나라 수출자를 조사하는 FTA 협정에 관한 자료는 미포함

II.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요청현황

가. 개요

- [FTA 특혜 검증] 검증요청 건수는 상대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협정상대국의 상황에 따라 변동적이나, 2023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
- [비특혜 검증] 비특혜 검증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검증요청이 접수되고 있으나, 최근 EU가 중국산 물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해 중국산 물품의 한국 우회수출 의심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원산지 조사를 요청 중

(단위: 업체수, %)
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 6월	전년동기대비
FTA특혜	765	714	363	207	△4.2
비특혜	18	16	6	3	-
소계	783	730	369	210	△4.1

나. 협정별 검증요청 현황

- [FTA 협정별] FTA 체결상대국 중 주로 튀르키예, EU, 인도, 아세안 등에서 검증요청이 집중되고 있음

다. 검증요청 사유

- [주요 요청사유] 주로 "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확인"을 위해서 우리나라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 중
 - [협정별 요청사유] 튀르키예는 "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의심"을 이유로, EU는 "인증수출자 유효성 의심"을 이유로, 아세안은 "원산지증명서의 내용 기재 오류"를 이유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
- ⇒ FTA 협정별 특성에 따라 국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 사유에 차이가 있으므로 하단의 "Ⅲ. 협정별 주요 검증동향"을 확인해 검증 대응 시 활용

Ⅲ. 협정별 주요 검증 동향

1 한-튀르키예 FTA

- [개요] 튀르키예는 FTA 체결국 중 국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가장 많이 요청하는 국가
- [요청 품목] 화학공업제품(합성수지) > 섬유류(직물) > 기계류(금속공작기계)
- [요청 사유] 주로 원산지신고서의 진위 여부 및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을 요청

○ [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]

- ⇒ 국내 수출 섬유제품에 대한 검증 결과, 역외산 원사를 이용해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등 한-튀르키예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위배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으므로 섬유제품 수출 시 사전에 반드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것
- ⇒ 튀르키예의 경우 검증 결과가 '불충족'으로 회신되면, **특혜 배제뿐만 아니라 수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**할 수 있기에 주의 요망

2 한-EU FTA

- [개요] 주요 검증 요청국가는 독일, 네덜란드, 이탈리아 등으로 최근 3년간 27개 EU회원국 전체로부터 다양하게 검증 요청이 접수되었음
- [요청 품목] **섬유류(직물) > 기계류(전기자전거) > 화학공업제품(합성수지)**
- [요청 사유]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, 원산지신고서 진위 여부, 인증수출자 지위 유효 여부에 관한 합리적 의심으로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
- [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]
 - ⇒ EU 각국 관세당국은 **인증수출자번호 조회 시스템**(관세청 FTA포털 內)을 활용하여 국내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유효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음
 - ⇒ 최근 한-EU FTA 관련하여, 미인증수출자가 C/O를 발급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수출자가 C/O를 발급하는 등 **인증수출자 관련 C/O 부적정 발급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음**
 - ⇒ 따라서, EU로의 수출물품에 대해 C/O를 발급하려는 경우
 - ①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지는 않았는지
 - ②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 유효한 인증수출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지
 - ③ 원산지신고문안에 인증수출자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였는지 그 여부를**반드시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한 후 발급 필요**

[예시] 인증수출자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, 수출물품의 HS 세번번호 오기제 등

3 한-인도 CEPA

- [개요] 2021년 인도의 원산지기준 심사 강화 조치 이후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나, 2022년부터는 기존 수준으로 감소
- [요청 품목] 전자전기제품(통신기기 부품) > 화학공업제품(합성수지) > 기계류(공구, 펌프 등)
- [요청 사유] 인도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및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
- [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]
 - ⇒ 한-인도 CEPA의 경우, 원산지결정기준으로 '세번변경기준'과 '부가가치기준'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'조합기준'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
 - ⇒ 특히 인도 관세당국은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,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수출물품의 부가가치 계산과 관련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
 - ⇒ 인도 관세당국은 검증 요청 시 제조원가, 제조공정 등 업체의 비밀취급자료를 상당수 요구하는 12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정형화된 질문지(Questionnaire) 작성을 함께 요청 중

4 한-아세안 FTA

- [개요] 주요 검증 요청국가는 태국, 인도네시아, 베트남, 말레이시아 등으로 최근 3년간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중 4개 회원국으로부터 검증요청이 접수됨
 - ※ 최근 3년간 아세안 국가로부터의 검증 요청 중 태국의 검증요청이 대다수
- [요청 품목] 화학공업제품(화장품) > 철강금속제품(관연결구) > 기계류(건설기계 부품)
- [요청 사유] 원산지증명서상의 내용 기재 오류(C/O와 인보이스 간 내용 상이 등)를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, 태국의 경우 수입국 - 수출국 간 HS세번 상이로 검증요청을 하는 경우도 다수 있음
- [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]
 - ⇒ 한-아세안 FTA의 경우,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기재 오류를 이유로 검증을 요청

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**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**을 철저히 준수하여 **기재 사항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**

- ⇒ **태국 관세당국**은 특히 물품의 **품목분류 정확성 여부**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기에, 태국으로 수출 시 해당 물품의 **수입국 HS세번**을 **정확히 파악**하고 해당 세번의 **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**를 **사전에 확인**할 것을 권장
- ※ **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,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참고**

5 기타 FTA

- [개요] 튀르키예, EU, 인도, 아세안 등 수출검증 요청 건수 상위 4개국 외 기타 FTA 체결국의 검증요청 건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
- ⇒ 주로 **한-중국 FTA, RCEP** 협정 적용과 관련해 검증요청이 접수되고 있음
- [요청 품목] **기계류(중고자동차) > 광산물(석유제품) > 화학공업제품(화학비료, 염료 등)**
- [요청 사유] **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**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
- [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]
- ⇒ RCEP 협정의 경우 역내 누적 등 원산지결정기준 규정이 타 협정에 비해 복잡하므로 **반드시 사전에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**할 필요가 있음

6 비특혜 원산지검증

- [개요] 비특혜 원산지검증은 EU, 튀르키예 측의 요청이 대다수
- [요청 품목] **철강금속제품(철강관) > 화학공업제품(합성수지) > 섬유류(직물)**
- [요청 사유] 수입국 내 **반덤핑관세·상계관세 부과**를 위해 물품의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하고자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
- [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]
- ⇒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수입국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발급되어야 하므로 **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전 수입국의 비특혜 원산지결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**